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n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in Korea

박정민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Jeong-Min Park(jmpark21@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관리·분권모형, 협력·분권모형, 경쟁·분권모형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협력·분권모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 중심어 : | 정부간 재정관계 | 정부간 관계 모형 | 관리분권모형 | 협력분권모형 |

Abstract

We are facing that we promptly meet the needs of the times which demand a local decentralization. We must consider, above all,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local decentralization or devolution successfully. In this respect, it is needed to enter into a relationship of intergovernmental function allocation. On this basis of this regard, we have to come up with right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Given this fact, this study will produce intergovernmental relation model, and then analyze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positively based on three criteria, such as intergovernmental power relations, role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allocation of tax resources. Analysis shows that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belongs to a management·decentralization model generally.

■ keyword : |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 Intergovernmental Relations Model | Management · Decentralization Model | Cooperation · Decentralization Model |

I. 서론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중앙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려

가 요구된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라고 할 수 있는 기능배분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간의 올바른 재정관계가 도출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최근 동향의 특징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

는 가운데, 특히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재정관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간 재정관계의 설계를 통해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접근과 수단들이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배분, 재원배분 등이 강조된다. 이 문제는 국가의 총 자원 중 얼마(규모)를, 어떤 방식(제도와 수단)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선택의 과제이다. 따라서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 재정관계에 관한 모형들을 유형화하고 모형을 구성하는 분석기준들을 도출한 다음 그러한 분석기준들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실증분석·평가하고자 한다.

II.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부간 관계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란 한 나라의 단위정부 간에 현실적으로 설정되었거나 제시될 수 있는 법적·정치적·행정적·재정적 제반 관계 및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간 관계는 정치적·행정적·사법적·재정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이며,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 정부간 관계에 관한 모형은 국가간 역사·정치체제·문화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한 국가 내부에서도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간 관계에 관한 논의는 크게 연방제 국가와 단일제 국가로 나누어 연방제 국가에서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역할변화에 관한 정부간 상호관계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다[2]. 반면 단일제 국가의 정부간 관계는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2.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

정부간 관계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상대적 우위 관계, 상호 독립적인 관계, 상호의존관계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3]. 따라서 정부간 관계 모형은 중앙정부의 집권성과 지방정부의 분권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의 문제와 상호관여를 어떤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분류된다. 이러한 정부간 관계 모형의 유형은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에도 적용할 수 있다.

표 2.1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1][4-12]

구 분	A	B	C	D
Wright(미국)	내포모형	-	중첩모형	대등모형
Griffith(영국)	대리인모형	-	-	동반자모형
Elock(영국)	대리인모형	-	교환모형	동반자모형
Rhodes(영국) Chandler(영국)	대리인모형	소작인모형	상호의존모형	동반자모형
村松謙夫(일본)	수직적 행정통제모형	-	상호의존모형	수평적 정치경쟁모형
天川晃(일본)	집권융합	집권분리	분권융합	분권분리
오재일(한국)	관치모형	-	상호의존모형	지치모형
김순은(한국)	지배적 분권모형	계층적 분권모형	협상적 분권모형	이상적 분권모형
곽재기(한국)	집권모형	행정적 분권모형	협조적 분권모형	경쟁적 분권모형
Andree Lajoie, 이와사키	-	행정권 위임	행정적 분권	정치적 분권
본 연구의 모형	집권모형	관리 분권모형	협력 분권모형	경쟁 분권모형

2.1 집권모형

집권모형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중앙집권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세제가 집권화되어 있고, 지방의 세율결정권은 제한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일선행정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존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2.2 관리·분권모형

관리모형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수준이 뒤에 나오

는 협력모형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재정분권화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이 운영되는 모형에 해당한다. 이 모형에서는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이 낮아 의존재원 비율이 높으며, 세율결정권에 있어서도 제한 세율의 범위에서 지방이 결정하는데, 실체는 확일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중앙·지방사무가 중복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통한 행정통제를 한다.

2.3 협력·분권모형

협력모형은 국가통합과 다양성을 융합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재정분권화를 강조하는 지방재정 운영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세원배분에 있어 높은 자주재원 비율을 보이며 의존재원 비율이 낮다. 지방이 스스로 세율을 결정하며 세율 격차가 낮은 모습을 보인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는 중복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포괄보조금을 교부하며, 입법통제에 의해 개입을 최소화한다.

2.4 경쟁·분권모형

경쟁모형은 전통적 재정연방주의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경쟁과 차별화 원리에 따라 기능 및 사무배분, 재원배분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지방재정 운영 시스템에 해당한다. 이 모형에서는 중앙과 지방세원이 분리되어 있고, 지방세의 경우 응익과세의 양상을 띠고 있다. 세율결정권은 지방에 따라 상이한 세율구조를 보이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

다. 정부간 재원 이전 면에서 살펴보면, 보조금은 한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 그치며, 지방재정조정기능이 취약한 편이다.

III.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증분석

1.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의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모형들을 중앙·지방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세원배분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 분석기준은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간 재정관계를 형성하는 근거이면서 모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여지는 것들이다.

1.1 정부간 권력관계

정부간 재정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력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간 권력관계는 다시 관여의 정도와 지방정부의 자치권 수준으로 양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의 유형은 권력적 관여와 비권력적 관여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자치권 수준이란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에 관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의 정도로 볼 수 있다.

1.2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역할분담의 문제는 어떤 기능을 중앙정부가 담당해

표 3.1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의 분석기준

분석기준		집권모형	관리·분권 모형	협력·분권 모형	경쟁·분권 모형
정부간 권력관계	통제기제	중앙정부 주도	주로 권력적 수단으로 통제	주로 비권력적 수단으로 통제	
	지방정부의 자치권	없음	주로 소극적 권리	주로 적극적 권리	완전한 적극적 권리
중앙/지방의 역할분담	사무중복여부	중앙정부가 일반적으로 처리	중복	중복사무 적음	분리
	지방사무비중 (자치사무비중)	지방사무 거의 없음 (낮음)	중앙사무보다 낮음 (비슷)	중앙사무보다 낮음 (높음)	중앙사무보다 높음
재원배분	총조세중 지방세 비중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재정자립도	매우 낮음	낮은 자주재원 비율	높은 자주재원 비율	매우 높음
	이전재정 중 일반보조금 비중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야 하며, 어떤 기능을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에 관한 지출책임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집권체제에서는 중앙정부가 사무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반면, 분권체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가 중복되는 경우와 사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자치사무는 자치권에 근거하여 주민의 복리를 위해 처리·관리·집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자치사무의 수가 많을수록 지방분권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3 세원배분

세원배분을 통하여 정부간 재정관계를 설계할 때에는 총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 재정자립도, 이전재원 중 일반보조금의 비중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먼저 총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개념이며,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분권체제로 갈수록 총조세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전체재원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분권체제로 갈수록 재정자립도는 높아진다. 또한 이전재원은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 사용 자율성이 보장된 일반재원과 자율성이 없이 중앙에서 용도가 정해지는 특정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보조금의 비중은 분권체제로 갈수록 높아진다.

2. 정부간 재정관계의 현황분석

2.1 정부간 권력관계

우선 관여의 정도를 보면 현실적으로 권력적 수단이 비권력적 수단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의 비중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자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인식조사』의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3][14]. 분석 결과 아직도 권력적 수단이 비권력적 수단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제약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자치권의 수준은 입법적 측면, 조직적 측면, 재정적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15], 재정적 측면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치재정권 수준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표 3-2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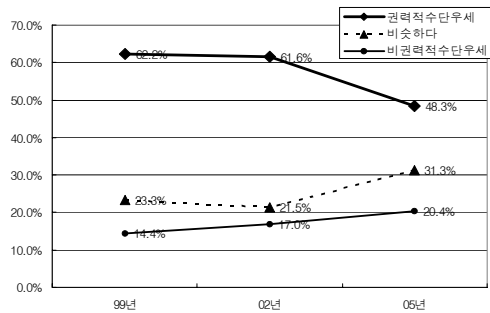


그림 3.1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 수단의 비중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변화

표 3.2 주요 OECD국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비교[15][16]

구분	지방세 신설 및 인상	지방채 발행	예산 편성
일본	조례에 의해 지방세 신설 가능 ○	도·도부현은 자치대신에게 승인을 얻어야 함 △	자치(성2)에서 작성하는 지방재정계획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지침으로 작용 △
영국	지방세 신설 불가 ×	기채의 자율성 ○	예산편성의 재량 ◎
미국	주민표결에 의한 지방세 신설과 인상 가능 ◎	수익채에 대한 재량권 부여 ○	
프랑스	지방세 신설 불가 ×	자유로운 지방채 발행 ◎	지역회계원의 재정통제 ○
한국	지방세 신설 불가 ×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채 발행 승인 △	예산편성지침 특정보조금운용 △

주 : ◎ - 완전자율, ○ - 약간의 통제, △ - 많은 통제, × - 완전통제

2.2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현행 법체계는 공공사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사무는 다시 국가가 그의 행정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93조). 이 때문에 상당부분 사무구분이 당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관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무를 국가사무와 비교해 보면 1994년의 경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75% : 25% 수준이었던 것이, 2002년의 경우 국가사무는 30,240건, 지방사무는 11,363건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 27% 수준이었다[17]. 따라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지방사무비율은 약 2%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표 3.3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교 (단위 : 개, %)

구분	1994년	2002년	2006년	이상
국가사무	11,744 (74.45)	30,240 (72.69)	29,229 (70.26)	22,435 (53.93)
지방사무	4,030 (24.16)	11,363 (27.31)	12,374 (29.74)	19,168 (46.07)
자치사무	2,110 (13.38/52.36)	10,052 (24.16 / 88.46)	10,947 (26.31 / 88.47)	
위임사무	1,920 (12.17/47.64)	1,311 (3.15 / 11.54)	1,427 (3.43 / 11.53)	
총 계	15,774	41,603	41,603	41,603 +

주: 1) 1994년과 2002년 결과는 「지방이양백서 (1999~2003)」의 재구성
 2) 2006년와 이상결과는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추진성과 보고」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 및 추산. 이탤릭체는 추산된 결과임.

2.3 자원배분

지방재정의 규모는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 시점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규모성장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지방재정의 규모성장은 지방자치제 도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지방재정의 규모, GDP 대비 비중, 국가재정 대비 비중 등 규모와 위상이 지방자치제 도입 해인 1991년을 전후로 크게 증가하고 변화하였다. 둘째, 지방재정의 규모는 지방자치 실

시 이후에도 매년 평균적으로 20%이상의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GDP 대비 지방재정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셋째,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국가재정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은 대략 60% 대 40%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과 더불어 형성된 구조로 15여 년 동안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여전히 국세중심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80% 대 20% 수준을 유지한 채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의 심화로 인해 예산기준으로 1995년 63.5%였던 것에 비해 2005년에는 56.2%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지방

표 3.4 지방재정의 규모 변화[18] (단위 : 억원, %)

연도	GDP ¹⁾		중앙재정 ²⁾		지방재정 ³⁾		C/A (%)	C/(B+C) (%)
	(A)	성장율	(B)	성장율	(C)	성장율		
1989	1,479,416	-	237,971	-	113,379	-	7.7	32.3
1990	1,782,621	20.5	284,519	19.6	161,663	42.6	9.1	36.2
1991	2,142,399	20.2	340,265	19.6	218,502	35.2	10.2	39.1
1992	2,387,046	11.4	383,222	12.6	266,598	22.0	11.2	41.0
1993	2,655,179	11.2	450,064	17.4	288,745	8.3	10.9	39.1
1994	3,037,726	14.4	546,292	21.4	359,754	24.6	11.8	39.7
1995	3,773,498	24.2	636,726	16.6	366,643	1.9	9.7	36.5
1996	4,184,790	10.9	723,078	13.6	444,447	21.2	10.6	38.1
1997	4,532,764	8.3	794,403	9.9	509,590	14.7	11.2	39.1
1998	4,443,665	-2.0	916,008	15.3	516,047	1.3	11.6	36.0
1999	4,827,442	8.6	978,658	6.8	539,794	4.6	11.2	35.5
2000	5,786,645	19.9	1,048,963	7.2	650,549	20.5	11.2	38.3
2001	6,221,226	7.5	1,115,353	6.3	791,099	21.6	12.7	41.5
2002	6,842,635	10.0	1,138,114	2.0	728,838	-7.9	10.7	39.0
2003	7,213,459	5.4	1,263,121	11.0	821,860	12.8	11.4	39.4
2004 (P)	7,794,019	8.0	1,328,900	5.2	872,840	6.2	11.2	39.6
2005 (P)	8,420,951	8.0	1,359,227	2.3	923,673	5.8	11.0	40.5

주: 1) 1995년 이전 GNP 적용
 2) 교육재정 포함하였으며 이전재정 제외
 3) 이전재정(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포함
 4) 세출순계로 2003년도까지는 결산이며 2004년은 최종예산, 2005년은 당초예산임

세수를 통한 인건비해결 단체 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의 확충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정해지는 특정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이며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에 해당한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이전재원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표 3.5 지방재정자립도 (단위 : %)

구분	자치단체수	재정자립도
1994	275	63.9
1995	141	63.5
1996	245	62.2
1997	245	63.0
1998	250	63.4
1999	248	59.6
2000	248	59.4
2001	248	57.6
2002	248	54.8
2003	248	56.3
2004	250	57.2
2005	250	56.2

IV. 평가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 관계모형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모형을 도출한 후,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정부간 재정관계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느 모형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정부간 권력관계에 있어 통제기제와 자치권의 수준을 평가하면, 통제기제 면에 있어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적용되는 권력적 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관리·분권모형에 가까우며, 점차 협력·분권모형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자치권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통제의 상태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관리·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측면에서 평가하면, 지방자치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방이 담당해야 할 기능이 확인되고 점진적 이양이 추진되어 왔으나 자치사무의 비중 측면에서 보면, 1994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75% : 25% 수준이었으며, 2002년은 73% : 27% 수준이었다. 이를 보면 자치사무의 비중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지방의 역할분담은 관리·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재원배분측면에서 평가하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재정은 양적인 면에서 절대적·상대적으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국가재정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은 대략 60% 대 40%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구조는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과 더불어 형성된 구조로 15여 년 동안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둘째, 국세 대 지방세의 관계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90% 대 10% 수준이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하여 80% 대 20% 수준으로 지방자치 초

표 3.6 이전재원 중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비중변화 [19][20] (단위 : 억원, %)

연도별	이전재원 (A=B+C)	일반재원 (B:지방교부세)	특정재원(C)			B/A	C/A
			계	양여금	보조금		
1991	64,155	34,524	29,631	5,570	24,061	53.8	46.2
1992	69,061	39,251	29,810	12,306	17,504	56.8	43.2
1993	80,026	44,124	35,902	14,211	21,691	55.1	44.9
1994	96,493	48,214	48,279	16,961	31,318	50.0	50.0
1995	116,539	56,746	59,793	18,701	41,092	48.7	51.3
1996	140,283	65,239	75,044	25,744	49,300	46.5	53.5
1997	154,527	70,146	84,381	28,772	55,609	45.4	54.6
1998	179,865	73,345	106,520	28,855	77,665	40.8	59.2
1999	195,123	69,187	125,936	29,061	96,875	35.5	64.5
2000	220,555	84,494	136,061	37,134	98,927	38.3	61.7
2001	281,562	123,501	156,061	46,281	111,780	43.9	56.1
2002	328,880	124,791	204,089	41,901	162,188	37.9	62.1
2003	337,043	150,378	186,665	44,120	142,545	44.6	55.4
2004 (P)	319,303	144,749	174,534	37,432	137,102	45.3	54.7
2005 (P)	324,887	172,074	152,813	-	152,813	53.0	47.0

전재원은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 사용 자율성이 보장된 일반재원과 자율성이 없이 중앙에서 용도가

기에 그 관계가 변화된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셋째, 재정자립도를 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분권 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Wright,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3rd ed.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 Cole Publishing Co., 1988.

[2] 김순은,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지방분권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3호, pp.313-336, 2003.

[3] 박정민, “정부간 관계 모형에 관한 고찰”, NGO연구, 제6권 제1호, 한국NGO학회, 2008.

[4] J. A. G. Griffith, *Central Departments and Local Authorities*, London: Allen & Unwin, 1966.

[5] Elcock and Howard, *Local Government: Politicians,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in local authorities*. London: Methuen, 1982.

[6] R. A. W. Rhodes, *Control and Power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London, Social Sciences Research Council, 1981.

[7] J. Chandler, *Local Government Tod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8] 村松崎夫, *地方自治*,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8.

[9] 天川晃, *変革の構想—道州制論の文脈*, 大森彌・佐藤誠三郎編, *日本の地方政府*,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6.

[10] 오재일, *政府間關係論と韓國の地方自治*, 日本中央大學博士學位請求論文, 2000.

[11] 광채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확충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하계세미나 발표 논문,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12] 김순은,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부간 관계의 혁신적 모형: 거버넌스 모형의 시도”,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2호, pp.3-33, 2005.

[13]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99)*, KIPA 연구보고 99-09, 1999.

[14]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2005)*, KIPA 연구보고서, 2005.

[15] 하혜수,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실태에 관한 연구: OECD국가와의 비교”, 한국행정논집, 제16권, 제1호, pp.107-130, 2004.

[16]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0-11, 2000.

[17]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백서(1999~2003)*, 2004.

[18] <http://www.mpb.go.kr>

[19] <http://www.mogaha.go.kr>

[20]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5.

[21] 김성호, “분권차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형태와 문제점”, 지방자치, 2000(2).

[22] 서정섭,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재정 세입변화 추이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 제2호, pp.105-128, 한국지방재정학회, 2005.

[23] 소순창,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실태와 발전방안,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2005.

[24] 원구환, “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4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25]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현황조사('96)*, KIPA 연구보고 96-02, 1997.

[26] 한국행정연구원,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 분석*, KIPA 연구보고서, 2007.

[27] 秋月謙吾, 民主主義体制における財政調整制度と政府間關係, 持田信樹[編], *地方分權と財政調整制度*,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6.

[28] Ebel, D. Rober and Y. Serdar, *Concept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World-wide Overview*. World Bank Institute, 2002.

[29] King and Davi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Concepts and Models*. I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edited by Ronald C.

Fisher.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7.

[30] Litvack, Jennie · Junaid Ahmad · Richard Bird, Decentralization: Rethinking Government, *World Development Report 1999/2000*, The World Bank: 107-124, 2000.

[31] Shah and Anwar, *The Reform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Developing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World Bank, 1994.

[32] <http://www.worldbank.org/wbi/publicfinance/decentralization/coursemodule.htm#4>.

저자 소개

박 정 민(Jeong-Min Park)

정회원



- 1993년 2월 : 전남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00년 2월 : 전남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7년 8월 : 전남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관심분야> :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찰·소방행정